의 안 번 호	5056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

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세종특별자치시장
제출 연월일	2026. 9. 18.

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056

제출연월일 : 2026. 9. 18.
제 출 자 : 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의결주문

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년 1월 폐업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을 향후 재설치·운영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(붙임 1)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4. 16. ~ 5. 6.(20일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: 2026. 4. 16. ~ 5. 6.(20일)

나) 협의결과

- 규제심사 결과: 심사대상 아님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평가대상 아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평가대상 아님

3) 비용추계 현황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 2)

4)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: 해당 없음

5) 관계 중앙부처: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□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)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
2. 아동과 모성, 장애인, 정신질환,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
3.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
4.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
5. 교육·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
6. 그 밖에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>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>
>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: 보건정책과장 김 수 영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관 실·과		보건정책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보건정책과장 김 수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보건의료정책팀장 이 미 정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보건서기 이민혜(044-300-5714)